

민주시민교육,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글 · 정선애 designsun21@naver.com

지난 10월 1일 교육기술과학부는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을 참여 시키고, 학생자치의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계획은 매우 주목할 만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해왔던 단체들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이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민주시민교육 개념에 대한 오해와 철학적 빈곤

'민주'라는 개념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삶과 제도를 조화시켜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만들어 간다.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와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배제, 생태적 위기, 평화체제 구축의 험난한 여정 등이 민주주의를 공고히 뿌리내리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민주시민교육으로 예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시장의 가치가 전 사회를 지배하는 데서 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

지 않고, 나라사랑 교육은 외국인인 110만 명인 다문화 사회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엇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제도와 질서를 준수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지만 공익에 반하는 권력이나 체제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실천도 필요하다.

최근 프랑스 고등학생이 정부의 '긴축재정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듯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는 과연 '4대강 건설 반대를 위한 청소년 동아리'도 포함될 수 있을까?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한 친구들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학생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게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장선생님을 비롯,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 1항의 존재자체와 의미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UN이 정한 이 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1991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

국이 되었다.) 하지만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권리’ ‘인권’ ‘비판’은 일종의 금칙어인 것처럼 보인다.

교과부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준법’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법치는 정치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이 조금씩 발전할 때마다 등장한 개념이다. 즉 시민의 준법의식을 강요하기 위한 위정자의 구호가 아니라 권력의 일탈을 경고하기 위한 시민들의 구호이다.(박은정,2010, 법의 지배란 무엇인가? 153-164P)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법치와 준법은 역사적으로 위정자의 구호였던 적 밖에 없으니 이 잣대가 오직 학생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지나친 걱정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많은 정부의 정책이 국정기조와 맞물려, 각종 전달체계를 통해 시행되지만 민주시민교육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부처가 의제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협약은 1976년 가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의 한 학술대회에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합의한 것이다.)에 따르면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을 특정한 견해로 몰아가는 의도된 진행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아서는 안되며, 학문분야와 생활영역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모순은 교육의 실제에도 모순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이 모순을 다루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을 설득하고 교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제와 프로그램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담당자들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국정홍보’가 정부의 역할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민주시민교육으로 곡해하여 정부 추진체계와 예산을 통해 활성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자발성을 가장 큰 생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지원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론화를 통해서 담아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 경제교과서 개정 논란만 보더라도 누가 교육의 내용을 만드는가가 그 어느 때 보다 민감한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 간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고 그에 부응하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틀을 짜야한다.

또한, 다양한 현실의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초 자료와 다양한 교재를 필요로 한다. 어떤 정보를 토대로 논의를 하느냐부터가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루어지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기초자료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시행처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중장기적인 노력이 드는 곳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에게는 민주시민교육 참가가 학습휴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가정주부에게는 아이돌보미 시설을 갖춘 교육장 마련을,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의 편의를, 이주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예산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글 정선애 |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